

경남 장애인 일자리복지센터 조성방안

2018. 8

송부용·이나래·양인선·이진우

경남 장애인 일자리복지센터 조성방안

2018. 8

송부용·이나래·양인선·이진우

연구진 profile

송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획조정실 선임연구위원(원장 직무대행) ◦경남의 산업경제 침체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여건 분석(경남발전연구원, 2018)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방안 연구(경남발전연구원, 2017) 등 다수
이나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기획조정실 주임 ◦여민동락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 결과 분석(경상남도, 2016) ◦경남 경제지표 및 경제동향 분석(경상남도, 2016) 등 다수
양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경제사회데이터연구팀) ◦통계 전공 ◦경남의 산업경제 침체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여건 분석(경남발전연구원, 2018) ◦경남 경제지표 및 경제동향 분석(경상남도, 2017) 등 다수
이진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경제사회데이터연구팀) ◦통계 전공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방안 연구(경남발전연구원, 2017) ◦경상남도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예비타당성 연구(경남발전연구원, 2018) 등 다수

요약 및 정책함의

□ 성격과 의의

- 구상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복지센터는 모든 도민이 다함께 어려운 여건과 곤궁을 이겨내고 보다 나은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은 비용으로 각 계층의 참여를 통해 「따뜻하고 마음 호뜻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개념과 정책의 의도를 가짐
- 본 사업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진전 속에서 도민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여 개인적 삶이 보장되고 건강을 유지하며 일자리도 가지면서 치유와 힐링, 의타의 정신으로 도민간에 서로 아끼고 봉사하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하여 100세 시대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임. 즉, 초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노인과 장애인, 이들을 돌보는 가정내 건강한 사람들까지 아우르는 종합복지적 성격을 가짐

□ 센터 구성과 운용 시나리오

- 센터 구성과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시나리오를 설정함
- 시나리오1(장애를 겪는 가족이 늘고 있음) : 가정에 장애를 겪거나 힘든 식구를 가진 가정이 늘고 있음. 해당 가족은 남녀노소, 병약함과 장애의 정도 또한 제각기 다름. 중중이거나 재력이 있는 경우 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치료를 의뢰하지만, 경중이거나 중중이라도 가족 치유를 희망하는 경우 혹은 치료비가 막대한 경우 등일 때 해당 장애인은 온 종일 가정에 있게 됨. 이 때 다른 가족들은 장애식구를 위해 개인 일을 하지 못하면서 가정 전체가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시나리오2(장애인일자리복지센터를 만들자) : 센터는 폐교, 읍면 사무소 혹은 노인복지회관 등을 활용하거나, 특정 지역 내의 유휴시설과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조성함
- 시나리오3(센터의 구성) : 장애인일자리복지센터 혹은 커뮤니티에는 일, 작업이 가능한 실내외 공동간편 작업장, 휴식과 수면실, 보건소, 친교나 레크레이션, 면회장, 자원봉사실, 목욕·찜질이나 침술실, 급식 식당, 헬스 등 실내운동시설, 옥외운동과 산책, 기업참여실(CSR), 면회 시설, 차량 지원소, 회의 및 관리사무실, 주민센터, 자원봉사자실, 주차장, 그리고 ICT설비 설치로 이용자의 안전과 가족·자녀간 통신시설 등을 갖추

- 시나리오4(센터의 운용) : 오전 10시를 전후하여 해당 지역내 유희차량 (통근차량, 유희차량, 지역내 기관과 업체의 지원차량, 기사도 무료로 지원받음)을 자원봉사형태로 지원받아 각 마을별·가정별 기거하는 몸이 좋지 못한 도민과 장애우를 센터(커뮤니티)로 모심. 장애인은 오후 5시 정도까지 커뮤니티에서 생활. 그 동안 간단한 작업이나 일을 하게 됨. 치유와 힐링, 휴식·취침과 보건진료를 받음. 친교, 식사, 목욕 등 개인과 가족의 희망, 혹은 일정 프로그램에 따라 센터생활을 하도록 함
- 시나리오5(센터에서의 작업과 일) :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작업장에는 다양한 기업체가 제공하는 힘들지 않는 일정한 일감을 제공(유료)하고, 이런 작업의 수익금에 해당 기업의 작은 지원금(CSR)을 합쳐 센터에서 생활하는 환자나 장애우들이 작업한 량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함
- 시나리오6(장애인 돌봄과 운용) :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군내외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다양한 봉사를 받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과 보건 서비스도 받으며, 일(작업) 외에 운동, 취침, 레저, 목욕, 찜질 등 개인별 희망하는 것을 자유롭게 즐기도록 함. 자원봉사자가 부족할 경우 커뮤니티에 참가하는 참가자들끼리 자원봉사자 역할을 하면서(서로 돕는) 일정의 자원봉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함. 센터 내에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가 같이 있을 경우, 일반주민들이 본인의 업무차 내방해 환우들이나 장애시민들과 인사, 친교, 자원봉사 등도 가능하도록 함. 오후 5시를 전후하여 다시 군내외 자원봉사지원차량을 이용하여 각 가정으로 복귀하여 가족 품으로 돌아감

□ 센터의 특징과 기대효과

- 이 커뮤니티에는 야간 취침이나 요양은 절대 하지 않음. 요양을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군민은 병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함. 센터에서는 재택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위주로 일도 하면서(일자리) 힐링과 치유가 가능하게 하는 참여형 종합복지 프로그램임
-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모든 몸이 불편한 분들은 전액 무료로 참여함. 유희시설을 활용하고 시설운영 경비도 많지 않음. 보건소, 급식소는 기존의 지자체 기능을 그대로 활용, 기업체들의 참여에 의한 일정한 수익을 활용하며, 자원봉사제의 원활한 운영으로 비용 절감
- 초기에 몇 곳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경상남도 전역으로 확대 가능. 예산부담 등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어서 100세 시대의 힐링과 치유의 장애인노인일자리종합복지사업장이 될 수 있음

차 례

I.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
3. 연구방법	2
II. 장애인 개념, 정책과 현황	3
1. 장애인의 개념	3
2. 장애인 관련 정책	6
3. 장애인 현황	11
4. 경남 자원봉사자 현황	14
5. 시군별 복지예산 비교	15
III.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16
1. 사회복지시설 개요	16
2. 장애인 생활시설	18
3. 장애인 이용시설	22
4. 보건기관	31
5. 장애인 단체 및 법인	33
IV. 장애인 고용현황	38
1. 장애인 고용현황	38
2. 장애인 산업 및 직종별 고용현황	40
3.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	42

V. 경남 장애인일자리복지센터 조성방안	43
1. 현황에서 본 시사점	43
2. 센터 조성방안	46
3. 관리·운영방안	48
 참고문헌	 51

I. 서론

1. 연구배경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는 그러한 유형의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 사회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특정 계층이나 영역을 넘어 국민 전체가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저변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각급 지자체에서는 행·재정적 투자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기능 습득과 사회적응을 강조하는 것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전제로 추진 중이며,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정일교·김만호, 2008)
 - 심신장애의 발생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의료·직업재활 및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장애인복지법, 1981)

2. 연구목적

-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 전달을 위한 시설, 기관, 복지법인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시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장애인 일자리복지센터의 건립을 제안하고자 함
 - 경남 시군지역의 기존 시설과 장애인 복지수요를 연결해주기 위함
- 특히 장애인의 개인적 자아실현과 경쟁사회로의 진입으로 돕거나 사회·문화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계획하고 지역의 자원봉사자, 보건시설 등을 연계하여, 장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모형을 제안하고자 함

3. 연구방법

- 적절한 기능과 형태의 시설모형 제안을 위해 먼저, 장애인의 개념과 유형·등급별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사업계획 등을 국가계획과 경남도의 자료를 통해 분석함
-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실현을 위해서 투입되는 재원, 자원봉사자 등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장애인 복지시설의 유형별 현황을 진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고용구조와 현황 등을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장애인의 복지실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시설의 모형을 제시하였음

II. 장애인 개념, 정책과 현황

1. 장애인의 개념

- 우리나라 장애분류 및 장애범주
 -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범주의 확대가 이루어짐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되었으며, 이후 198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의 범주를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등 5가지로 한정함
 - 1997년 공포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장애범주가 기관장애와 정신장애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2000년 1월부터 심장, 신장기능장애, 정신장애, 자폐 등이 법적인 장애범주에 포함됨
 - 2003년 7월, 2차 장애인범주 확대에 따라 안면장애, 간질, 장루·요루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등 5가지 종류가 추가됨

(표1) 우리나라 장애분류 및 장애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기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행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변형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자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장애판정등급기준, 2017.4.13.

- 보건복지부의 “제4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2013~2017)”에서 장애인판정제도의 개선,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영역 설정 및 단계적 도입방안 등을 제시함

□ 주요국 장애범주

- 법·제도적 측면에서 장애를 범주화하는 것은 개별국가에서 복지정책의 수혜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장애의 정의와 범주는 국가의 상황 등이 고려됨
 -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양한 장애를 법정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권장하며, 우리나라나 일본은 신체 구조 및 신체 기능상의 장애로 판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서구 선진국에서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조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위임 (김성언, 2005)

(표2) 주요 국가의 장애범주

구분	장애범주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 심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 시각, 청각장애, 음성언어장애, 평형기능장애, 저작기능장애 ○ 정신지체, 정신장애 ○ 내부장애(심장, 호흡기, 신장, 방광, 직장, 소장기능, 면역기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 외형적 추형, 신경계, 근골격계, 감각기관 장애 ○ 정신질환, 발달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알코올중독 등 ○ 내부장애(생식기, 소화기, 비뇨기, 피부, 혈액·내분기, 암, AIDS 등)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질환, 질병, 부상, 선천적 기형 ○ 이로 인해 자신의 연령, 경험, 자격에 상응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자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 정신지체, 학습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약물·알코올중독 ○ 내부장애(폐질환, 신장질환, 알레르기, 당뇨) ○ 사회적장애(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민자, 타인 의존자)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안면기형) ○ 정신지체, 정신장애, 정서장애, 알코올·약물 중독 ○ 내부장애(심장, 신장, 호흡기, 당뇨, 암, AIDS 등)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추형) ○ 정신지체, 정신질환, 정서장애 ○ 내부장애(호흡기, 심장순환기, 소화기, 비뇨기, 신장, 생식기, 신진대사, 혈관, 피부)

주)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의 장애기준 연령은 20~64세임
 자료) 이성규(2011).

□ 중증장애인의 개념

-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의 의미는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 자립, 근로활동에 보다 어려움을 갖고 있어 의료적인 지원, 사회적인 지원에서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간주되며, 중증장애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조흥식, 2014.11)
- 장애인 고용과 관련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의 개념과 별도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규정함. 이를 ‘직업적 중증장애인’이라 할 수 있음

(표3) 장애인 인정범위 및 중증장애인 범주

구분	장애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장애인복지법상분류	지체장애	■	■	■											
	뇌변병장애	■	■	■											
	시각장애	■	■	■											
	청각장애	■	■	■											
	언어장애	△	△	△											
	지적장애	■	■	■	△	△	△								
	정신장애	■	■	■	△	△	△								
	자폐성장애	■	■	■	△	△	△								
	신장장애	■	■	■	△	△	△								
	심장장애	■	■	■	△	△	△								
	호흡기장애	■	■	■	△	△	△								
	간장애	■	■	■	△	△	△								
	안면장애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간질장애(뇌전증)	■	■	■	△	△	△								
	국가유공자	■	■	■				△	△	△	△	△	△	△	△

주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범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주2) 장애인 인정 및 확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진단서.

자료) 이재열(2013).

2. 장애인 관련 정책

1) 중앙정부 정책

□ 제4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2013~2017)1)

○ 종합계획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4대 분야, 19대 중점과제, 71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복지, 교육, 문화, 경제활동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장애인정책 추진
- 장애인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장애인정책 추진
- 우리나라 주도의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인천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 정책 추진

비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4대 분야	19대 중점과제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1.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2.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3.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4.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5.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1.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2. 특수교육 지원강화 3.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4.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5.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2.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3.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4. 장애인 고용인프라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1.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3.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4.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5.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그림1〉 제4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비전 및 중점과제

1) 관계부처 합동(2012).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²⁾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함³⁾
-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근로자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으며, 지급단가는 장애정도, 고용률, 경증장애인의 경우 근속기간별 1인당 15~50만원을 지원함(최성일 외, 2013)

□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용자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설치비용 및 구입비용, 수리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조건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3%이며, 용자기간동안 공단에서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현황 등을 분기(반기)별로 확인함

□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지원

- 통근용 승합자동차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구입·수리비용 등의 비용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재택근무형태로 중증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 장비(컴퓨터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⁴⁾

□ 고용관리비용 지원

- 장애인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자격이 있는 작업지도원을 위촉·선임·배치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은 제외됨

2)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6년까지 2.7%에서 2018년까지 2.9%, 2019년 이후 3.1%로,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2018년까지 3.2%, 2019년 이후 3.4%로 상향됨(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4)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용자지원 규정 제4조.

- 장애인근로자 직업생활 및 고충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배치할 때, 중증장애인(청각·언어장애인 제외) 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배치하는 경우임
- 보조공학기기⁵⁾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상용보조기기와 맞춤보조기기를 지원함
 - 사용보조기기는 공단이 매년 공시하는 품목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
 - 맞춤보조공학기기는 장애유형과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개인별 맞춤 제작하여 지원
- 표준사업장⁶⁾ 설립지원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에 대한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를 지원(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50%)하며, 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지원함(정부24 홈페이지)
- 근로지원인 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핵심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 도움을 받도록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며, 월 100시간 이내에서 지원함
 - 근로지원인을 지원받는 시간당 500원의 자부담이 장애인에게 부담됨

5) 장애인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학기술을 응용, 접목한 기기 또는 장치를 말함. 상용용보조공학기기는 시중에서 구입 또는 임대가 가능한 기기이고 맞춤보조공학기기는 장애유형과 직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의 업무에 적합하도록 제작 또는 주요 기능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조한 기기임(보조공학기지지원 업무처리규칙 제2조).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 근로자 중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노인입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말함.

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2) 경상남도 정책

□ 경상남도 정책목표(2017년)

- 경남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서민복지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노인, 여성, 아동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음
- 복지정책의 내용 중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일자리 지원 및 자립기반 강화, 복지건강서비스 확대를 세부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책과제(3-6)	장애인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부과제	주요 내용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거주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198개소, 63억원 ○ 장애인 단체 운영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19개 단체, 15억원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및 시민촉진단 지원: 22개소, 13억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12개소, 16억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14개소, 20억원 ○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 21개소, 24억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자립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6개 사업, 1,270명, 130억원 ○ 장애인 맞춤형 훈련센터 설치·운영: 훈련인원 100명, 17억원 ○ 취업 전 현장훈련 확대 실시: 10개 사업장, 50명, 1.5억원 ○ 중증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45개소, 126억원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원: 54,925명, 756억원
장애인 복지 건강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장애인복지관 사업: 5개군(의령, 함안, 고성, 함양, 합천), 1,040명 ○ 돌봄 서비스 확대(활동지원,도우미): 5,659명, 524억원 ○ 장애아동 발달재활·언어발달서비스: 2,986명, 65억원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313가구, 11억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6,298명, 25억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재활(전문)병원: 5개소, 12억원

〈그림2〉 경상남도 장애인 관련 정책과제

□ 경남도 장애인복지과 정책사업

- 경상남도는 복지보건국의 장애인복지과를 중심으로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크게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활동지원, 장애인 생활환경개선과 건강서비스 확대, 장애인 복지 재활사업 내실화, 자립기

반 강화,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 및 생활안정 지원, 다양한 장애인 욕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임

(표4) 경남도 장애인복지과 정책사업

분류	사업명	
장애인 사회참여 및 생활편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중증장애인 전용치과 및 산부인과 운영 ◦장애인 단체 지원 ◦장애인 행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관련 지원센터 지원 ◦시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장애인 복지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및 시군 장애인 복지관 운영 및 지원 ◦장애인 복지관 평가자 실비보상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중증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시군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광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 ◦탈시설 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
장애인 소득안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종사자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일자리 행사 등 지원 ◦시각장애인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일자리 지원(복지·일반형·시간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일자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 지원
중증장애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도·시군)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공공후견 심판청구 비용 지원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 ◦발달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3. 장애인 현황⁸⁾

□ 시도별 인구 대비 장애인 현황

- 전국 장애인 인구규모는 2016년 기준 51,696,216명 중 2,511,051명인 4.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장애인 인구의 전체 비중이 20.8%, 15.6%로 높게 나타났음
-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중은 전라남도 7.4%, 전라북도가 7.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강원도 6.4%, 경상북도 6.3% 등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인구 대비 장애인 비중은 광역시가 도단위 지역보다 비중이 낮게 나타났음

(표5) 시도별 인구 및 장애인 현황(2016년)

(단위 : 명, %)

시도	인구	비중	장애인 인구	비중	장애인/인구
합계	51,696,216	100.0	2,511,051	100.0	4.9
서울특별시	9,930,616	19.2	391,027	15.6	3.9
부산광역시	3,498,529	6.8	168,950	6.7	4.8
대구광역시	2,484,557	4.8	117,111	4.7	4.7
인천광역시	2,943,069	5.7	135,623	5.4	4.6
광주광역시	1,469,214	2.8	68,569	2.7	4.7
대전광역시	1,514,370	2.9	71,425	2.8	4.7
울산광역시	1,172,304	2.3	49,533	2.0	4.2
세종특별자치시	243,048	0.5	9,845	0.4	4.1
경기도	12,716,780	24.6	522,437	20.8	4.1
강원도	1,550,806	3.0	98,928	3.9	6.4
충청북도	1,591,625	3.1	94,688	3.8	5.9
충청남도	2,096,727	4.1	126,406	5.0	6.0
전라북도	1,864,791	3.6	130,345	5.2	7.0
전라남도	1,903,914	3.7	141,578	5.6	7.4
경상북도	2,700,398	5.2	169,643	6.8	6.3
경상남도	3,373,871	6.5	180,665	7.2	5.4
제주특별자치도	641,597	1.2	34,278	1.4	5.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2016년 기준)-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2016년 기준).

8)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보건복지부 승인통계, 2016년 기준.

□ 경남 유형·등급별 장애인 현황

- 2016년 말 현재, 경남의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 95,119명(52.6%), 청각 18,236(10.1%), 뇌병변 17,433명(9.6%), 시각 17,051명(9.4%), 지적 14,202명(7.9%)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6급, 5급 등의 경증 등급이 전체 46.7%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음
-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에 있어서는 대부분 1~3급의 판정으로 중증 등급이며, 호흡기, 심장, 신장 등에서 각각 99.1%, 86.9%, 76.4%로 중증으로 나타났음

(표6) 경남 유형·등급별 장애인 현황(2016년)

(단위 : 명, %)

구분	계	비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180,665	100.0	13,410	24,908	31,500	26,527	39,861	44,459
지체	95,119	52.6	2,370	5,096	11,671	17,746	29,650	28,586
시각	17,051	9.4	2,085	467	694	904	1,370	11,531
청각	18,236	10.1	414	3,458	2,964	4,048	4,818	2,534
언어	1,315	0.7	10	182	554	569	0	0
지적	14,202	7.9	3,595	5,094	5,513	0	0	0
뇌병변	17,433	9.6	3,720	3,582	4,050	2,252	2,022	1,807
자폐성	1,423	0.8	588	657	178	0	0	0
정신	7,686	4.3	169	2,520	4,997	0	0	0
신장	5,009	2.8	320	3,502	4	42	1,141	0
심장	252	0.1	3	18	198	3	30	0
호흡기	806	0.4	111	246	442	0	7	0
간	601	0.3	8	19	46	15	513	0
안면	210	0.1	8	35	57	104	5	1
장루·요루	944	0.5	1	11	64	612	256	0
뇌전증	378	0.2	8	21	68	232	49	0
비율	100		7.4	13.8	17.4	14.7	22.1	24.6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2016년 기준).

□ 경남 시군별 장애인 현황

- 장애인 인구의 시군별 비중은 인구 비중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창원시가 전체 장애인의 26.9%인 48,5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김해시가 12.7%, 진주시가 9.7% 순으로 높은 비중으로 보임
- 총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의 비중은 경남 전체가 5.4%이며, 시군별로 높은 지역은 의령군이 10.5%로 가장 높았으며, 남해군 10.0%, 합천군 9.9% 순으로 나타났음
 - 그 비중은 군지역이 시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하동, 산청, 합천 등의 지역 비중이 10%대를 육박하고 시지역 중에서는 밀양시가 7.7%로 높게 나타났으며, 창원, 거제 등의 시지역에서는 4.6%, 4.2% 등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표7) 경남 시군별 장애인 현황(2016년)

(단위 : 명, %)

구분	인구	비중	장애인	비중	장애인/인구
합계	3,373,871	100.0	180,665	100.0	5.4
창원시	1,063,907	31.5	48,591	26.9	4.6
진주시	346,739	10.3	17,472	9.7	5.0
통영시	138,160	4.1	7,434	4.1	5.4
사천시	114,912	3.4	7,333	4.1	6.4
김해시	529,422	15.7	22,998	12.7	4.3
밀양시	108,354	3.2	8,360	4.6	7.7
거제시	257,183	7.6	10,719	5.9	4.2
양산시	317,037	9.4	13,977	7.7	4.4
의령군	28,111	0.8	2,956	1.6	10.5
함안군	68,937	2.0	5,077	2.8	7.4
창녕군	63,982	1.9	5,074	2.8	7.9
고성군	54,703	1.6	4,600	2.5	8.4
남해군	45,129	1.3	4,518	2.5	10.0
하동군	49,622	1.5	4,645	2.6	9.4
산청군	36,098	1.1	3,471	1.9	9.6
함양군	40,241	1.2	3,658	2.0	9.1
거창군	63,308	1.9	5,049	2.8	8.0
합천군	48,026	1.4	4,733	2.6	9.9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2016년 기준)·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2016년 기준).

4. 경남 자원봉사자 현황

- 2015년 경남도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총 646,422명이며, 지자체 별로 창원시 33.2%인 214,45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김해가 15.7%, 진주가 10.2%로 나타났음
- 전체 인구 대비 19.2%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비중이 높은 지역은 남해가 29.0%이며, 다음으로 밀양 23.7%, 하동 23.3% 등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자원봉사 참가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8) 경남 시군별 자원봉사자 현황(2015년)

(단위 : 명, %)

구분	인구(한국인)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인구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3,364,702	1,694,981	1,669,721	646,422	275,557	370,865	19.2	16.3	22.2
창원시	1,070,064	543,647	526,417	214,456	85,212	129,244	20.0	15.7	24.6
진주시	344,426	170,506	173,920	65,629	25,769	39,860	19.1	15.1	22.9
통영시	139,168	70,360	68,808	17,970	7,807	10,163	12.9	11.1	14.8
사천시	115,452	57,932	57,520	16,730	7,442	9,288	14.5	12.8	16.1
김해시	528,865	267,227	261,638	101,654	39,585	62,069	19.2	14.8	23.7
밀양시	107,896	52,786	55,110	25,584	11,773	13,811	23.7	22.3	25.1
거제시	255,828	135,281	120,547	48,777	27,785	20,992	19.1	20.5	17.4
양산시	301,291	151,653	149,638	59,186	24,540	34,646	19.6	16.2	23.2
의령군	28,544	13,700	14,844	4,967	2,254	2,713	17.4	16.5	18.3
함안군	69,156	34,865	34,291	10,653	4,538	6,115	15.4	13.0	17.8
창녕군	63,817	31,622	32,195	8,772	3,748	5,024	13.7	11.9	15.6
고성군	55,284	27,715	27,569	10,735	5,017	5,718	19.4	18.1	20.7
남해군	45,865	21,878	23,987	13,291	6,900	6,391	29.0	31.5	26.6
하동군	50,259	24,804	25,455	11,688	6,150	5,538	23.3	24.8	21.8
산청군	36,071	17,643	18,428	7,352	3,734	3,618	20.4	21.2	19.6
함양군	40,339	19,290	21,049	7,034	3,478	3,556	17.4	18.0	16.9
거창군	63,232	30,664	32,568	11,590	4,819	6,771	18.3	15.7	20.8
합천군	49,145	23,408	25,737	10,354	5,006	5,348	21.1	21.4	20.8

자료) 경상남도(2017).

5. 시군별 복지예산 비교

- 경남도와 시군 지자체별 복지예산은 크게 사회복지예산과 보건예산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2017년 경남도 전체 예산 6조 4,629억원 중에서 35.2%인 2조 2,755억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 경남도의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0.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7% 이상, 시급 지자체에서는 20%가 넘는 지자체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원시의 비중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9) 시군별 복지예산 비교

(단위 : 억원, %)

구분	총예산	복지예산					
		복지예산		사회복지예산		보건예산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총계	166,660	52,876	31.73	50,080	30.05	2,796	1.68
경남도	64,629	22,755	35.21	21,673	33.53	1,082	1.67
시군 합계	102,031	30,121	29.52	28,407	27.84	1,714	1.68
창원시	19,667	7,348	37.36	7,012	35.65	336	1.71
진주시	8,391	2,999	35.74	2,868	34.18	131	1.56
통영시	5,118	1,310	25.60	1,227	23.97	83	1.62
사천시	4,730	1,411	29.83	1,326	28.03	85	1.80
김해시	10,456	3,775	36.10	3,569	34.13	206	1.97
밀양시	5,090	1,360	26.72	1,282	25.19	78	1.53
거제시	5,496	1,723	31.35	1,626	29.59	97	1.76
양산시	7,723	2,483	32.15	2,360	30.56	123	1.59
의령군	2,726	564	20.69	517	18.97	47	1.72
함안군	3,244	608	18.74	547	16.86	61	1.88
창녕군	3,757	965	25.69	903	24.04	62	1.65
고성군	3,400	816	24.00	761	22.38	55	1.62
남해군	3,159	756	23.93	705	22.32	51	1.61
하동군	3,851	814	21.14	744	19.32	70	1.82
산청군	3,204	682	21.29	622	19.41	60	1.87
함양군	3,603	679	18.85	639	17.74	40	1.11
거창군	4,147	936	22.57	877	21.15	59	1.42
합천군	4,269	892	20.89	822	19.26	70	1.64

주) 경상남도 및 시군별 2017년 재정공시 예산(일반회계)기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Ⅲ.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1. 사회복지시설 개요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개별법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며,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유로 복지시설 등이 있음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시설임. 노인복지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포함)을 비롯하여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등이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심신장애자보호 및 재활을 위한 생활시설 등이 있고, 아동양육시설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양육 능력이 없는 18세 미만자의 보호시설 등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시설 이용을 통해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함

(표10)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종류	개소수		소관부처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결핵·한센시설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복합노인 복지시설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9)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표 10) 사회복지시설의 종류(계속)

구분	시설종류	개소수		소관 부처
		생활시설	이용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보건 복지부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공동생활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보육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여성 가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 경상남도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시설 종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음
- 경남도에서 현황 파악을 위해 정리한 유형은 크게 생활시설, 이용시설, 장사시설, 보건기관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생활시설은 408개, 이용시설 7,713개, 장사시설 221개, 보건기관 416개 등이 있음
 -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은 생활시설 160개(생활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이용시설 171개(이용시설, 복지관 등) 등이 있음

(표11) 경상남도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구분		개소수
생활시설 (408)	정신요양시설	4
	노숙인시설	4
	장애인생활시설	96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52
	양로요양시설	240
이용시설 (7,713)	사회복지관	30
	사회복귀시설	4
	장애인이용시설	153
	장애인복지관	18
	경로당	7,274
	노인보호전문기관	2
	노인복지관	21
	재가노인복지시설	211
장사시설 (221)	공원묘지	31
	봉안시설	60
	화장장	10
	장례식장	120
보건기관 (416)	보건소	20
	보건지소	175
	보건진료소	221

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복지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2017년 기준자료이며, 그 외는 2016년 기준자료임.

2.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 등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함

장애인 생활시설¹⁰⁾

- 지체, 중증, 지적, 영유아 등으로 구분. 현재 32개 시설에 1,553명이 생활 중임

10)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 교육, 심리, 사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의 질을 누리고, 잠재 능력을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정상화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

(표12)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2017년 8월 기준)

시군	시설 구분	시설명	운영법인	설치일	생활자		종사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32개소			1,718	1,553	1,043	982
창원(7)	지체	풀잎마을	(사)선린복지재단	79.03.24.	85	73	46	46
	중증	해강마을	(사)해강복지재단	03.06.19.	56	48	35	31
	지적	꿈의동산	(사)해강복지재단	09.04.16.	40	36	24	22
	영유아	초록나무	(사)해강복지재단	10.06.07.	40	20	25	16
	중증	이름다운학원	(사)꿈과희망	10.01.06.	40	35	29	26
	지적	진해재활원	(사)혜원	93.11.03.	51	51	33	33
	중증	하늘정원	(사)드림재단	10.11.19.	30	29	23	23
진주(1)	중증	행복한 남촌마을	남촌	09.04.23.	45	38	32	27
통영(1)	지체	자생원	자생원	51.08.10.	69	68	40	37
사천(1)	지적	평강의집	사회복지법인에덴	07.03.26.	40	40	26	24
김해(4)	지적	한마음학원	(사)한마음학원	00.11.27.	49	49	34	32
	지적	우리들의집	(사)그대그리고나	06.12.01.	50	47	31	31
	지적	도림원	(사)함께걸음	06.01.09.	50	47	33	30
	지적	루먼	개인운영	13.07.02.	20	10	6	3
밀양(1)	지적	크레파스	나눔과배움	08.08.07.	40	37	27	26
거제(3)	지적	애광원	사회복지법인 거제도애광원	52.11.27.	107	94	54	58
	중증	민들레집	사회복지법인 거제도애광원	86.10.16.	119	99	56	56
	중증	반아원	사회복지법인내원	00.06.23.	80	63	37	36
양산(2)	지적	무궁애학원	사회복지법인무궁애학원	82.08.30.	90	90	53	50
	중증	늘푸른집	사회복지법인신생원	94.10.11.	50	48	35	34
의령(1)	지적	소망의집	의령복지마을	93.01.01.	90	84	50	46
함안(1)	지적	로사의집	범숙	10.01.25.	36	36	26	25
창녕(1)	중증	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	사회복지법인 덕인복지재단	11.03.24.	30	30	22	20
고성(1)	지적	천사의집	사회복지법인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	92.07.07.	60	56	30	30
남해(2)	지적	남해사랑의집	남해사랑의집	03.08.14.	36	30	24	22
	중증	남해소망의집	보물	15.11.16.	30	30	22	15
하동(1)	중증	섬진강사랑의집	사회복지법인혜림원	06.01.01.	60	52	38	37
산청(2)	중증	성심인애원	(재)프란치스코회	95.06.21.	83	78	47	46
	지적	이레마을	사회복지법인이레공동체	07.06.07.	40	35	27	24
함양(1)	중증	함양연꽃의집	사회복지법인연꽃	13.08.22.	30	28	25	25
거창(1)	중증	월평빌라	이웃사랑복지재단	08.12.12.	32	32	26	24
합천(1)	중증	평화마을사랑의집	평화마을복지재단	07.07.30.	40	40	27	27

□ 장애인 단기주거시설¹¹⁾

○ 사단법인, 개인 등이 12개 시설을 운영 중이며, 160명이 생활하고 있음

(표13) 장애인 단기주거시설 현황(2017년 8월 기준)

시군명	시설명	운영자	설치일	생활자		종사자
				정원	현원	
계	12개소			224	160	65
창원(1)	진동사랑의집	(사)진동사랑의집	16.02.04.	20	13	7
진주(4)	애인사랑시집	사랑그린	08.02.12.	15	11	6
	늘사랑	늘사랑복지재단	05.09.26.	20	18	4
	한마음의집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00.08.11.	30	18	6
	진주소담마을	고려장애인부모회	04.04.30.	16	12	6
통영(2)	사랑이모이는샘	(사단)한국지역장애인복지협회	05.05.02.	20	19	4
	민들레집	(사단)한국장애인부모회통영시지부	16.01.04.	10	3	3
거제(1)	사랑울타리	거제소망사회복지회	07.09.01.	30	17	8
양산(1)	새힘	사회복지법인무궁애학원	16.10.11.	10	2	4
의령(1)	사랑의집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	03.08.28.	23	23	7
함안(1)	햇살가득단지보호	윤임	15.09.10.	15	10	5
고성(1)	와로	사회복지법인보이지않는손	09.01.08.	15	14	5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¹²⁾

○ 총 52개의 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생활자는 한 가정당 4명을 기준으로 생활하는 시설이 대부분으로 총 239명이 생활 중에 있음

(표14)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현황(2017년 기준)

시군명	시설명	운영법인	생활자		종사자
			정원	현원	
계	52개소		260	239	72
창원(20)	사랑의집	(사단)사랑의집	4	3	1
	보람의집	(사)범속	4	4	1
	사랑의여울목	(사단)한국장애인부모회창원시부모회	4	4	1
	사랑의오두막	(사단)한국장애인부모회창원시부모회	4	3	1

11)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12) 장애인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의 소규모 주거시설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표14)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현황(2017년 기준)(계속)

시군명	시설명	운영법인	생활자		종사자
			정원	현원	
계	52개소		260	239	72
창원(20)	베델	(사단)예향	4	4	1
	백향	(사단)예향	4	5	1
	예향	(사단)예향	4	4	1
	에셀	(사단)예향	4	4	1
	에스더의집	(사)선린복지재단	4	4	1
	나눔터	(사)상남복지재단	4	4	1
	마창밀알	(사단)마창밀알	4	4	1
	요셉의 집	(사)선린복지재단	4	4	1
	밀알행복지기동산	(사단)마창밀알	4	4	1
	호계쉼터	개인운영	9	4	1
	진해장애인복지관공동생활가정	(재단)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4	4	1
	밀알	(사)드림재단	4	3	1
	로뎀	(사단)예향	4	5	1
	소망원	개인시설	4	4	1
	은혜원	개인시설	4	4	1
한누리	개인시설	4	4	1	
진주(3)	동행의집	밀알복지재단	4	4	1
	베데스다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8	8	2
	아델시안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움	4	3	1
통영(2)	밀알의집	(재단) 세석밀알	4	4	2
	밀알사랑터	(재단) 세석밀알	4	3	1
사천(2)	사랑동지	개인시설	4	4	2
	사랑동지 II	개인시설	4	4	1
김해(5)	밀알복지홈	개인시설	4	3	1
	밀알미션홈	개인시설	4	3	1
	한울타리장애인그룹홈	(사)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	4	3	1
	자성원	개인시설	4	4	2
	늘해랑	(사단)한국장애인부모회김해시지부	4	4	1
밀양(3)	선주원	개인시설	6	6	1
	한누리	개인시설	4	4	1
	광명의집	더 굿 세이브	4	2	1
거제(8)	성빈하나	사회복지법인거제도애광원	4	3	1
	성빈두나	사회복지법인거제도애광원	4	4	1
	성빈세나	사회복지법인거제도애광원	4	3	1
	성빈네나	사회복지법인거제도애광원	4	4	1

(표14)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현황(2017년 기준)(계속)

시군명	시설명	운영법인	생활자		종사자
			정원	현원	
거제(8)	실로암	사단법인거제장애인전도협회	4	11	3
	베데스다의집	개인시설	8	11	2
	작은예수회고현공동체	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	8	13	4
	파랑포 작은예수회집	작은예수수녀회	9	10	6
양산(1)	예은의집	개인시설	8	8	3
의령(1)	자연치유 복지센터	개인시설	18	9	4
함안(2)	아우름	윤임	4	2	-
	함께	아라가야	4	-	-
남해(2)	진영이네 집	남해사랑의 집	4	4	1
	우리들의 집	남해사랑의 집	4	4	1
함양(1)	문화소망의집	개인시설	6	6	3
거창(2)	사랑의공동체센터	개인시설	8	5	1
	두레누리	한국기독교장로회복지재단	8	4	1

3.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이용시설¹³⁾ 총괄

- 경남에서 장애인 이용시설로 분류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분류와 내용을 같이 하고 있음

- 8개 종류의 시설이 121개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음

(표15) 장애인 이용시설 총괄

계	주간 보호 시설	체육 시설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수화 통역 센터	점자 도서관	의료 재활 시설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 생상품 판매시설
121	26	1	20	20	1	3	49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¹⁴⁾

- 총 26개의 시설이 운영 중이며, 369명이 입소되어 생활하고 있음

1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기능을 분류한 것이며,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임.

14)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표1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2017년 기준)

시군	시설명	운영법인명	설치일	입소인원		종사자
				정원	현원	
계	26개소			453	369	93
창원 (8)	요한의집	(사복)선린복지재단	97.06.10.	12	15	3
	도담도담	(사)한국장애인부모회창원시지부	00.12.30.	15	9	3
	동진	(사복)동진	02.12.02.	20	11	4
	햇살지기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06.01.17.	15	13	2
	맑은내주간보호	(사)느티나무창원시장애인부모회	07.11.02.	20	17	4
	내서지역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재)대한예수교장로회경남노회유지재단호계문창교회	12.11.05.	28	15	4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02.03.04.	15	14	2
	밀알장애인주간보호	(사복)드림재단	08.06.30.	20	11	3
진주 (2)	진주장애인복지센터	(사)고려장애인부모회	00.06.29.	40	33	4
	장애인주간보호시설늘푸른	(사복)늘사랑복지재단	08.11.07.	10	10	3
통영 (2)	민들레집	(사)장애인부모회 통영시지부	03.09.02.	20	17	4
	아름다운 동행	(사)한국장애인부모회경남지회	10.03.29.	15	8	2
사천 (2)	사천시주간보호센터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08.12.31.	15	15	5
	사천열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사천시지부	15.12.11.	15	12	5
김해 (3)	동화장애인주간보호소	학교법인인제학원	03.03.04.	15	15	5
	우미우손장애인주간보호소	(사)한국장애인부모회김해시지부	11.04.14.	15	12	3
	김해장애인주간보호소	(재)김해시복지재단	08.04.16.	15	15	4
밀양 (2)	아람나무	밀양남부복지재단	06.06.13.	12	11	3
	다솜나무	밀양남부복지재단	11.05.14.	12	7	3
거제 (2)	낮은울타리	(사복)거제소망사회복지회	02.10.28.	30	19	6
	주바라기	(사)거제장애인전도협회	07.11.21.	20	21	4
양산 (3)	행복한 장애아동주간보호	(사)기아대책	05.03.03.	10	10	3
	웅상장애인주간보호	(재)양산시복지재단	14.03.20.	14	16	4
	양산시장애인주간보호	(재)양산시복지재단	15.03.17.	10	10	3
고성 (1)	사랑나눔 공동체	(사복)보이지않는손	02.07.30.	25	20	4
함양 (1)	함양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함양군복지회	06.03.02.	15	13	3

□ 장애인 체육시설¹⁵⁾

- 현재 창원시립곰누리 국민체육센터 1개소가 운영 중이며, 장애인 1일 평균 이용인원은 200여명으로 수영, 헬스장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

(표17) 장애인 체육시설

시군명	시설명	운영법인명 (대표자)	개관일	1일 평균 이용인원	종사자	운동종목
계	1개소			200	23	
창원 (1)	창원시립곰누리 국민체육센터	(사)경남지체장애인협 회 창원지회	12.10.16.	1,300 일반1,100 장애인200	23	수영, 헬스, 탁구, 댄스, 요가, 농구 등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¹⁶⁾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각 지회별을 중심으로 경남 전체 시군구에 20개소의 심부름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평균 487명이 이용하고 있음

(표18)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2017년 기준)

구분	시설명	운영법인명	설치일	1일평균 이용인원	종사자
계	20개소			487	61
창원	창원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창원시창원지회	03.02.04.	50	4
	마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창원시마산지회	09.01.01.	60	5
	진해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창원시진해지회	04.02.26.	40	3
진주	진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진주시지회	02.03.23.	42	4
통영	통영시장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통영시지회	03.01.01.	20	3
사천	사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사천시지회	05.08.10.	10	3
김해	김해시장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김해시지회	05.07.08.	40	3
밀양	밀양시장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밀양시지회	03.02.07.	20	6
거제	거제시장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거제시지회	04.01.26.	25	3
양산	양산시장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양산시지회	02.03.22.	27	3
의령	의령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의령군지회	04.05.18.	9	2
함안	함안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함안군지회	05.09.01.	5	2
창녕	창녕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창녕군지회	04.04.01.	30	2
고성	고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고성군지회	04.07.26.	8	2
남해	남해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남해군지회	04.05.19.	10	2
하동	하동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하동군지회	03.03.01.	14	3
산청	산청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산청군지회	05.07.13.	5	2
함양	함양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함양군지회	05.07.06.	12	3
거창	거창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거창군지회	03.02.13.	40	3
합천	합천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합천군지회	04.05.28.	20	3

15)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임(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16)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 수화통역센터¹⁷⁾

- 명예직원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사)한국농아인협회의 경남협회와 각 시군별 지부·지회가 운영 중에 있고, 1일 평균 582명이 이용함

- 현재 함양군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표19) 수화통역센터 현황(2017년 기준)

시군명	시설명	운영법인명 (대표자)	설치일	1일평균 이용인원	종사자
계	20개소			582	75
도	수화통역센터 경남지원본부 (농아인지원센터)	경남협회	08.07.30.	50	6
창원	창원수화통역센터	창원시창원지부	04.03.22.	60	5
	마산수화통역센터	창원시마산지부	08.07.29.	50	4
	진해수화통역센터	창원시진해지부	07.05.08.	40	4
진주	진주시수화통역센터	진주시지회	02.03.23.	60	4
통영	통영시수화통역센터	통영시지부	02.03.01.	25	4
사천	사천시수화통역센터	사천시지회	04.06.01.	15	4
김해	김해시수화통역센터	김해시지부	02.03.02.	40	3
밀양	밀양시수화통역센터	밀양시지부	05.10.01.	50	5
거제	거제시수화통역센터	거제시지회	07.03.27.	20	4
양산	양산시수화통역센터	양산시지회	04.03.23.	20	4
의령	의령군수화통역센터	의령군지회	14.11.03.	5	2
함안	함안군수화통역센터	함안군지회	11.09.01.	10	3
창녕	창녕군수화통역센터	창녕군지회	09.07.01.	20	3
고성	고성군수화통역센터	고성군지회	10.10.13.	15	3
남해	남해군수화통역센터	남해군지회	05.07.04.	20	3
하동	하동군수화통역센터	하동군지회	11.09.09.	30	4
산청	산청군수화통역센터	산청군지회	10.08.12.	14	3
거창	거창군수화통역센터	거창군지회	04.04.07.	30	4
합천	합천군수화통역센터	합천군지회	17.04.10.	8	3

□ 점자도서관¹⁸⁾

- 경남에 유일한 점자도서관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유치하며, 1일 170명이 이용 중임

17)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18)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연람하게 하는 시설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표20) 점자도서관(2017년 기준)

시설명	신고일	운영주체	1일 평균 이용인원	종사자
경남점자정보 도서관	03.7.22.	(재)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170	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¹⁹⁾

○ 의료재활시설로 3개 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1일 평균 569명이 이용함

(표21) 의료재활시설

시설종류	시설명	운영법인	1일 평균 이용자	종사자	비고
	계	3개소	569	258	
장애인의료재 활시설	요한의 집(창원)	(사)선린복지재단	130	29	
	도담도담(거제)	사회복지법인내원	154	79	
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 재활병원(양산)	양산부산대 학교병원	285	1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은 아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²⁰⁾

○ 직업재활시설은 크게 보호작업장²¹⁾과 근로사업장²²⁾으로 구분되며, 경남에는 근로사업장이 5개, 보호작업장이 44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음

- 전체 시설에 1,051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창원이 488명으로 전체 46.4%가 근무하며, 진주 101명(9.6%), 김해 100명(9.5%)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표2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2017년 8월 기준)

구분	종류	시설명	설치일	종사자		근로 장애인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49개소		230	204	1,312	1,051	
창원 (21)	보호	베델	04.03.15.	7	7	30	30	
	보호	사랑의 집	04.03.11.	4	4	24	22	
	보호	두레풍장	03.05.01.	4	4	25	21	

19)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장애인복지법 제58조).

20)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임(장애인복지법 제58조).

21)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22) 직업능력은 있으나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표2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2017년 8월 기준)(계속)

구분	종류	시설명	설치일	종사자		근로 장애인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창원 (21)	보호	디딤돌	07.12.28.	4	4	20	20		
	보호	금시루	12.11.01.	5	5	25	21		
	보호	한창코리아	09.11.30.	5	5	19	14	개인	
	보호	선린	99.01.22.	10	6	45	41		
	보호	나눔터	02.12.31.	5	4	40	19		
	보호	늘품	05.11.30.	6	6	36	36		
	근로	행복주식회사	10.06.07.	10	9	30	30		
	보호	참좋은F&D	09.12.29.	5	5	30	29		
	보호	나눔일터	08.08.27.	3	2	18	19		
	보호	내서보호작업장	12.10.11.	5	5	30	30		
	보호	행복나눔	02.03.20.	3	3	20	18		
	보호	한우리	12.02.23.	3	2	15	10	개인	
	근로	창원시직업재활센터	10.10.28.	12	12	70	62		
	보호	창원시보호작업센터	10.12.01.	5	5	40	20		
	보호	진해장애인보호작업장	14.08.28.	6	5	20	17		
	보호	밀알희망작업장	13.07.04.	4	3	30	10		
	보호	하늘빛보호작업장	13.07.05.	5	2	30	16		
	보호	다음	16.04.01.	2	2	10	3	개인	
	진주(5)	보호	참좋은	05.10.05.	3	3	30	21	
		보호	일송	95.03.08.	3	3	20	20	
		보호	대명	08.12.31.	3	3	20	20	
보호		한아름	11.05.11.	5	3	20	20		
보호		진주시직업재활센터	15.10.01.	3	3	20	20		
통영(1)	보호	성광직업재활원	89.04.01.	3	3	10	10		
사천(2)	보호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09.12.15.	6	6	40	39		
	보호	새로힘장애인보호작업장	11.04.21.	4	4	30	26		
김해(5)	보호	한마음직업재활원	05.07.28.	4	4	39	30		
	보호	함께하는 일터	06.01.10.	3	3	24	29		
	보호	도란	07.12.21.	3	3	30	20		
	보호	세아	11.06.30.	3	3	30	18		
	보호	진영	16.12.26.	3	3	14	3	신규	
밀양(3)	보호	미리벌	10.09.16.	6	6	30	24		
	보호	이레	12.04.19.	5	5	20	18		
	보호	해울	13.11.29.	4	4	10	10		
거제(2)	보호	애빈	00.07.31.	6	6	43	43		
	보호	소원의향구	16.10.10.	3	1	7	7		

(표2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2017년 8월 기준)(계속)

구분	종류	시설명	설치일	종사자		근로 장애인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양산(2)	보호	미래직업재활원	00.06.30.	6	6	45	39	
	보호	희망나라	11.11.22.	4	4	25	22	
의령(1)	보호	이든애	15.01.18.	3	3	12	6	
함안(1)	보호	위드에이블	14.08.06.	3	3	20	16	
창녕(1)	근로	창녕군장애인 근로사업장	10.08.26.	10	7	30	21	
고성(1)	보호	영보직업재활센터	00.07.01.	3	3	20	10	
남해(1)	근로	가온누리	09.09.25.	4	3	40	35	
산청(1)	보호	이레I&B	06.02.08.	3	3	16	16	
함양(1)	보호	함양군보호작업장	15.04.24.	4	3	30	12	
거창(1)	근로	거창군장애인 근로사업장	13.07.31.	7	3	30	8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²³⁾

- 경남에는 1개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인 나누미가 운영 중에 있으며, 위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음. 경남도는 2016년 161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있으며, 2016년 28억 5천여만원의 총 매출액으로 꾸준한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음

(표2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시설명	운영주체	지정일자	종사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재)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08.11.14.	7

□ 장애인 복지관²⁴⁾

- 장애인 복지관은 도 1개와 11개 시군에 13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센터는 함안, 고성, 함양, 합천군 지역에 각 1개소를 설치·운영

23)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24)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하고 있음. 1일 평균 이용인원은 4,360명임

(표24) 장애인 복지관

구분	시설명	운영법인	설치 신고일	1일평균 이용인원	종사자
계	18개소			4,360	336
복지관	14개소			4,150	319
도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복)범숙	92.07.30.	350	29
창원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복)범숙	01.12.21.	450	22
	마산장애인복지관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03.05.28.	400	21
	진해장애인복지관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04.07.01.	400	21
진주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복)늘사랑	03.11.27.	300	23
통영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학교법인 박영학원	14.12.05.	250	22
사천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07.03.27	300	24
김해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김해시복지재단	05.12.06.	396	25
밀양	'18년 상반기 개관 예정				
거제	거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희망복지재단	09.12.26.	200	20
양산	양산시장애인복지관	(재)양산시복지재단	15.03.11.	564	33
창녕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창녕군지회	07.03.28.	160	24
남해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사복)남해복지재단	08.07.30.	100	17
하동	'18년 상반기 개관 예정				
산청	산청복지관	(사복)한일복지재단	17.01.19.	130	20
거창	거창군삶의쉼터장애인복지관	(사복)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08.06.26.	150	18
복지센터	4개소			210	17
함안	함안군 장애인재활센터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함안군지회	05.04.01.	40	3
고성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사복)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	16.12.07.	20	4
함양	함양군 장애인복지센터	(사복)함양군복지회	03.07.02.	100	6
합천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사복)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	16.11.28.	50	4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²⁵⁾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향상과 지역사회내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증대를 위한 기능으로 경남에는 총 14개소의 자립생활센터가 운영 중에 있음
- 이러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을 도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동료상담, 정보제공, 자립생활기술지원 등을 실시함
- 총 14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4개 센터가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10개 센터는 도비지원을 받고 있음

(표25)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구분	시군명	센터명	설립일	지원예산	비고
계		14개소			
국비 지원 센터	창원	경남장애인 자립생활센터	07.04.07.	150백만원 (국비 40%, 도비 60%)	경상남도 센터
	창원	아자장애인 자립생활센터	05.02.25.	개소당 153백만원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	보조센터
	통영	통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07.04.26.		
	양산	양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09.11.21.		
도비 지원 센터	창원	창원장애인 자립생활센터	07.04.07.	개소당 140백만원 (도비 40%, 시군비 60%)	시군 자체
	창원	마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07.04.12.		
	창원	진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09.05.27.		
	창원	한울타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07.06.15.		
	진주	참샘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06.01.01.		
	김해	김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08.10.23.		
	밀양	밀양장애인 자립생활센터	07.03.26.		
	거제	거제시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1.01.31.		
	하동	하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4.09.01.		
	사천	사천시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4.07.29.		

25) 2007년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 출범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개혁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 당당한 실천임을 선언하였음.

4. 보건기관

□ 보건소

- 지역보건법 기준²⁶⁾에 따라 20개 보건소가 있으며, 산청은 보건의료원, 통합창원시 출범 이전의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임

□ 보건지소

- 읍면동지역의 주민인구를 감안하여 지역의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음

(표26) 보건지소

기관명	개소	지 소 명
계	175	
창원시 창원	3	동읍, 북면, 대산
창원시 마산	6	동마산, 내서, 구산, 진동, 진북, 진전
창원시 진해	1	서부도시보건지소
진주시	11	문산, 금곡,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대곡, 미천, 대평, 수곡
통영시	3	욕지, 한산, 사랑
사천시	7	정동, 사남, 곤양, 곤명, 서포, 사천, 삼천포
김해시	8	한림, 진례, 생림, 상동, 대동. 진영건강증진센터, 동부도시보건지소, 장유건강지원센터
밀양시	9	무안, 삼랑진, 하남, 산외, 산내, 단장, 상남, 초동, 청도
거제시	11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 연초, 하청, 장목, 아주, 칠천
양산시	6	웅상, 물금, 동면, 원동, 상북, 하북
의령군	11	칠곡, 대의, 화정, 용덕, 정곡, 지정, 봉수, 궁류, 유곡, 낙서, 부림
함안군	6	함안, 군북, 법수, 대산, 칠북, 칠원
창녕군	13	남지, 고암, 성산, 대합, 이방, 유어, 대지, 계성, 영산, 장마, 도천, 길곡, 부곡
고성군	13	고성, 삼산, 하일, 하이, 상리, 대가, 영현, 영천통합, 구만, 회화, 마암, 동해, 거류
남해군	9	이동, 상주, 삼동, 미조, 남면, 서면, 고현, 설천, 창선
하동군	12	화개, 악양, 적량, 횡천, 고전, 금남, 금성, 진교, 양보, 북천, 청암, 옥종
산청군	9	덕산통합, 차황, 오부, 생초, 금서, 단성, 신안, 생비량, 신등
함양군	10	마천, 유림, 안의, 서하, 서상, 백전, 수동, 휴천, 지곡, 병곡
거창군	11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신원, 가조, 가북
합천군	16	봉산, 묘산, 가야, 야로, 울곡, 초계, 쌍책, 덕곡, 청덕, 적중, 대양, 쌍백, 삼가, 가회, 대병, 용주

26)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설치)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보건소의 설치)에 따라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는 사군구로 1개씩 설치함. 필요에 따라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보건진료소²⁷⁾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료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
- 221개의 보건진료소가 운영 중이며 창녕, 거창 등의 군 지역에 다수 분포함

(표27) 보건진료소

기관명	개소	진료소명
계	221	
창원시 창원	2	봉강, 동전
창원시 마산	3	수정, 시락, 의산
창원시 진해	2	연도, 수도
진주시	13	갈곡, 정동, 소곡, 대사, 중도, 대동, 부계, 마진, 갈전, 대암, 향양, 동전, 외울
통영시	18	풍화, 학림, 추도, 곤리, 지도, 수월, 용호, 안정, 노대, 두미, 연화, 추봉, 매죽, 염호, 비진, 호두, 두역, 양지
사천시	12	북사동, 소곡, 가천, 통양, 반룡, 검정, 본촌, 봉계, 은사, 금진, 비토, 신수
김해시	1	도요
밀양시	15	용성, 미전, 백산, 남전, 가산, 고정, 남명, 안법, 범도, 동산, 봉황, 차월, 내진, 중산, 덕법
거제시	12	산달, 외포, 가배, 화도, 한내, 학동, 망치, 명동, 가조, 덕곡, 구영, 구조라
양산시	2	화제, 선리
의령군	10	양성, 중촌, 성당, 여의, 서암, 평촌, 화양, 신촌, 백곡, 송산
함안군	9	월촌, 이령, 문암, 여항, 백산, 장암, 이룡, 청계, 부목
창녕군	19	옥천, 고곡, 방리, 유산, 광계, 월영, 동정, 오호, 구산, 신기, 대견, 모곡, 회룡, 용소, 논리, 광산, 효정, 성곡, 반포
고성군	12	삼봉, 수양, 덕명, 장좌, 신전, 봉발, 청광, 신리, 어신, 봉현, 연지, 매정
남해군	15	시문, 동천, 선구, 노량, 광천, 남상, 가인포, 덕월, 중현, 대벽, 고두, 적량, 흥현, 울도, 연곡
하동군	18	범왕, 화정, 동매, 삼화, 성천, 덕천, 목계, 북방, 남산, 고하, 중평, 전대, 우계, 위태, 부덕, 갑정, 방화, 우북
산청군	15	상중, 서부, 평촌, 법률, 민암, 구평, 향양, 중산, 입석, 신안, 문대, 내대, 소남, 가계, 오성
함양군	11	창원, 업천, 상남, 동도, 죽산, 운곡, 백운산, 팔령, 실덕, 용추, 마평
거창군	18	거기, 월성, 지산, 용암, 소정, 모동, 임불, 강천, 개명, 하성, 봉산, 고향, 양지, 대현, 중촌, 도리, 진목, 울리
합천군	14	양지, 송산, 이책, 대동, 백산, 장단, 동리, 소례, 평지, 대기, 하남, 병목, 장인, 와리

27) 농어촌 등 보건의료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따라 시장(도농복합형태),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함.

5. 장애인 단체 및 법인

□ 장애인 단체현황

- 장애인복지 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은 27개로 대부분의 본부(지역본부 등)는 창원시에 위치해 있음

(표28) 장애인 단체현황

단체명	소재지
27개 단체	
(사)경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129호
(사)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1번지, 215호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26번길 10, 401호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1번지, 213호
(사)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450, 134호
(사)경상남도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58-3번지, 4층
(사)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08, 302호
(사)경상남도장애청소년문화교육진흥센터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110, 302호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20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남협회	사천시 정동면 산천강1길 11, 106호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상남도협회	창원시 동읍 동읍로457번길 48
(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 경상남도협회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18번길 45, 205-3호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남협회	창원구 의창구 우곡로3번길 79(명서동)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94, 409호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경남지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7-135번지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경상남도지부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49번길 30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남분사무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길 370-1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상남도협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미천2길 243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151호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남장애인인권포럼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 303호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경상남도장애인재활협회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별관 9호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남협회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364-11
(사)한국장애인케어협회 경상남도협회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5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통영시 장골로 18-10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상남도협회	진주시 도동로178번길 13-1(하대동)
경남장애인문화협회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152-3호
한우리 인성회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실내체육관 1층

□ 장애인 복지법인

○ 각종 시설 운영 등의 복지법인이 49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표29) 장애인 복지법인

명칭	시군	설립일자	사업종류	비고
계	49개소			
거제도애광원	거제시 장승포동	55.05.04.	애광원, 민들레집	재활
신생원	양산시 상북면	57.10.21.	늘푸른집(중증)	재활
무궁애학원	양산시 물금읍	57.09.07.	무궁애학원(지적)	재활
선린복지재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58.06.26.	풀잎마을, 홍익재활병원	재활
자생원	통영시 정량동	63.08.22.	자생원(지체)	재활
법숙	창원시 의창구 북면	92.03.20.	로사의 집(지적,함안)	재활
혜원	창원시 진해구 태평동	98.07.20.	진해재활원(지적)	재활
한마음학원	김해시 대청동	99.07.03.	한마음학원(지적)	재활
해강복지재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01.06.02.	해강마을, 초록마을	재활
함양군복지회	함양군 함양읍	03.07.02.	함양군장애인복지센터	재활
남해사랑의집	남해군 남해읍	03.08.14.	남해사랑의집(지적)	재활
나눔복지재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03.05.13.	직업재활시설	자립지원
함께걸음	김해시 한림면	04.12.24.	도림원(지적, 실비)	재활
드림재단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05.08.26.	하늘정원(중증)	재활
사랑그린	진주시 수곡면	05.10.07.	애인사랑시집(단기)	재활
이레공동체(구 함께나눔)	산청군 산청읍	06.01.18.	직업재활시설	자립지원
에덴	사천시 곤양면	06.03.03.	평강의집(지적)	재활
그대그리고나	김해시 상동면	06.10.24.	우리들의집(지적)	재활
남촌	진주시 문산면	06.11.02.	행복한 남촌마을(중증)	재활
이웃사랑복지재단	거창군 남상면	06.12.11.	월평빌라(중증)	재활
나눔과 베품	밀양시 무안면	06.12.28.	크레파스(지적)	재활
보이지 않는 손	고성군 삼산면	07.03.21.	와로(단기)	재활
상남복지재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07.03.21.	나눔터(공동생활가정)	재활
남해복지재단	남해군 이동면	07.04.24.	남해장애인복지관	재활
꿈과희망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07.06.08.	보호작업장운영	자립지원
평화마을복지재단	합천군 청덕면	07.07.30.	평화마을 사랑의 집(중증)	재활
아그네스복지재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07.09.07.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자립지원
더굿세이브	밀양시 가곡동	08.08.05.	공동생활가정	재활
무지개복지재단	밀양시 가곡동	08.08.05.	공동생활가정	재활
진동사랑의집(단기신축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09.09.01.	단기거주시설	재활
늘사랑복지재단	진주시 대평면	10.07.19.	늘사랑(단기,주간보호)	재활

(표29) 장애인 복지법인(계속)

명 칭	소 재 지	설립일자	운영시설	비고
아름다움	진주시 수곡면	11.07.15.	아델시안(공동생활가정)	재활
윤임	함안군 가야읍	11.07.20.	단기, 공동생활가정	재활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1.10.31.	천사의집, 사랑의집	재활
경남재활복지재단	진주시 이반성면	11.04.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립지원
해운	김해시 진례면	10.12.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립지원
대명복지재단	진주시 문산읍	10.01.06.	보호작업장운영	자립지원
낮은 울타리	밀양시 상남면	10.07.29.	보호작업장운영	자립지원
희망과 행복나눔	양산시 매곡동	10.11.15.	보호작업장운영	자립지원
빅토리아	창원시 의창구 북동	12.12.14.	보호작업장운영	자립지원
빛의사자들 복지재단	밀양시 하남읍	13.09.12.	장애인보호작업장	자립지원
거제소망사회복지회	거제시 연초면	13.03.19.	사랑울타리(단기)	재활
사회복지법인행복누리복지재단	창원시 의창구 대신면	13.03.21.	주간보호시설	재활
아라가야	함안군 산인면	13.12.13.	함께(공동생활가정)	재활
가람	함안군 칠원면	14.05.26.	보호작업장운영	자립지원
자리타복지재단	창원시 진해구 서중동	14.08.12.	보호작업장운영	자립지원
수연	의령군 칠곡면	14.12.24.	보호작업장운영	자립지원
보물	남해군 남해읍	15.10.05.	남해소망의집(중증)	재활
바지랑대 복지재단	김해시 진영읍	16.10.31.	보호작업장운영	자립지원

□ 장애인 사단법인

- 도에서 허가하는 사단법인은 2016년 말 현재, 19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임

(표30) 장애인 사단법인

법인명	지역	설립일자	사 업 목 적	회원
계	19개소			
(사)경상남도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창원시	99.12.31.	장애인 인식개선	13개단체
(사)사랑의 집	창원시	01.09.0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65
(사)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	창원시	02.11.08.	장애인재활, 교육	13,500
(사)예향	창원시	03.12.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0
(사)경상남도장애청소년문화교육진흥센터	창원시	05.05.16.	장애청소년 교육	250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창원시	05.12.27.	장애인복지증진	4,000
(사)경남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	창원시	08.01.22.	장애인권익옹호	1,000
(사)경상남도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창원시	06.02.15.	시각장애인복지증진	3,257
(사)고려장애인부모회	진주시	00.05.18.	장애인부모교육	77

(표30) 장애인 사단법인(계속)

법인명	지역	설립일자	사업목적	회원
(사)신호등도움회	창원시	11.12.09.	장애인활동보조	100
(사)큰나무	창원시	11.12.09.	장애인가족 직업재활	111
(사)창원밀알	창원시	12.08.21.	장애인복지지원	134
(사)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창원시	13.11.06.	장애인 인권상담 및 차별행위 상담	279
(사)거제시장애인평생교육 지원센터	거제시	16.03.29.	장애아동·청소년·성인장애인등 지원	45
(사)덕성장애인생활자립협회	의령군	16.06.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설치·운영	75
(사)진선	진주시	16.08.1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련 사업	110
(재)송아회	양산시	16.09.09.	장애인 생계비 및 가족 장학금, 장례비 지원	6 (발기인)
(사)하늘복지회	사천시	16.10.13.	장애인 권익보호 및 자립지원	100
(사)다원장애인복지회	창원시	16.11.15.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기능지원	114

□ 장애인 관련 시설 및 단체현황

- 전체 생활자(이용인원)는 8,893명으로 시설당 38.0명이 이용하고 종사자 1인당 2.9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활시설은 시설당 20.3명, 종사자 1인당 1.7명이 이용하고, 이용시설은 시설당 45.4명, 종사자 1인당 3.6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31) 장애인 관련 시설 및 단체현황 요약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생활자		종사자		생활자/시설수	생활자/종사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760	2,885	8,893	2,355	3,028	38.0	2.9
생활 시설	소계	96	2,202	1,952	1,043	20.3	1.7
	생활시설	32	1,718	1,553	1,043	48.5	1.6
	단기주거시설	12	224	160	-	13.3	2.5
	공동생활가정	52	260	239	-	4.6	3.3

주1) 체육시설, 심부름센터, 점자도서관 등의 생활자는 1일 이용객 산정을 기준임.

주2) 전체 시설수당 생활자 및 종사자 수는 해당 값에 현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산정함.

(표31) 장애인 관련 시설 및 단체현황 요약(계속)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생활자		종사자		생활자/ 시설수	생활자/ 종사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이용 시설	소계	153	683	6941	1,312	1,909	45.4	3.6
	주간보호시설	26	453	369	-	93	14.2	4.0
	체육시설	1	-	200	-	23	200.0	8.7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	20	-	487	-	61	24.4	8.0
	수화통역센터	20	-	582	-	75	29.1	7.8
	점자도서관	1	-	170	-	5	170.0	34.0
	의료재활시설	3	-	569	-	258	189.7	2.2
	직업재활시설	49	230	204	1,312	1,051	4.2	0.2
	생산물 판매시설	1	-	-	-	7	-	-
	복지관	18	-	4,360	-	336	242.2	13.0
	자립생활센터	14	-	-	-	-	-	-
보건 기관	소계	416	-	-	-	-	-	-
	보건소	20	-	-	-	-	-	-
	보건지소	175	-	-	-	-	-	-
	보건진료소	221	-	-	-	-	-	-
단체 및 법인	소계	83	-	-	-	-	-	-
	단체	27	-	-	-	-	-	-
	복지법인	49	-	-	-	-	-	-
	사단법인	19	-	-	-	-	-	-

주1) 체육시설, 심부름센터, 점자도서관 등의 생활자는 1일 이용객 산정을 기준임.

주2) 전체 시설수당 생활자 및 종사자 수는 해당 값에 현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산정함.

IV. 장애인 고용현황

1. 장애인 고용현황²⁸⁾

□ 장애유형별 구직 및 취업 동향

- 유형별 구직자는 지체장애가 36.5%인 5,170명으로 가장 많으며, 지적장애 3,269명, 청각장애 1,359명, 시각장애 1,198명, 뇌병변장애 1,109명 등의 순임
- 취업자도 지체장애가 2,497명으로 가장 많고, 지적장애 1,857명, 청각장애 722명, 시각장애 59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취업률은 안면장애 70.4%, 지적장애 56.8%, 자폐성장애 53.4%, 청각장애 53.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32) 장애유형별 구직 및 취업 동향

(단위:명,%)

구 분	구직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증감		증감		증감
지체장애	5,170	20.4	2,497	27.5	48.3	2.7
뇌병변장애	1,109	12.4	527	32.7	47.5	7.3
시각장애	1,198	28.7	590	6.3	49.2	-10.4
청각장애	1,359	16.7	722	11.2	53.1	-2.6
언어장애	173	1.8	91	28.2	52.6	10.8
지적장애	3,269	20.1	1,857	44.1	56.8	9.5
정신장애	873	11.8	381	21.7	43.6	3.5
자폐성장애	281	32.5	150	57.9	53.4	8.6
신장장애	347	47	132	48.3	38.0	0.3
심장장애	38	46.2	19	35.7	50.0	-3.8
호흡기장애	31	29.2	11	10.0	35.5	-6.2
간장애	65	209.5	22	46.7	33.8	-37.6
안면장애	27	42.1	19	72.7	70.4	12.5
장루요루장애	36	80	15	66.7	41.7	-3.3
뇌전증장애	114	15.2	30	7.1	26.3	-2.0
상이등급	75	-11.8	38	0.0	50.7	6.0
미분류	7	133.3	2	-	28.6	28.6
계	14,172	20.1	7,103	28.2	50.1	3.1

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2017년 3/4분기.

- 2016년 3분기에 비해 구직자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증가한 반면, 취업률은 전년 동분기 대비, 안면장애 12.5%p, 언어장애 10.8%p, 지적장애 9.5%p 등의 순으로 증가한 반면, 간장애 37.6%p, 시각장애 10.4%p 등의 순으로 감소하였음

□ 지역별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 전국 평균 장애인 취업률은 50.1%로 나타났고, 취업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가 67.8%로 가장 높고, 부산 58.8%, 강원도 57.1%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자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가 1,83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079명, 부산 581명 등임
- 경남 장애인 취업률은 51.8%로 전체 6위 수준이며, 취업자 규모도 457명(5위)임

(표33) 지역별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2017년 3분기)

(단위:명,%)

구 분	구인		구직		알선		취업		취업률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	6,763	30.4	2,205	15.6	4,447	28.4	1,079	15.2	48.9
경기	6,004	27.0	3,730	26.3	4,087	26.1	1,832	25.8	49.1
인천	940	4.2	1,078	7.6	965	6.2	511	7.2	47.4
강원	461	2.1	315	2.2	211	1.3	180	2.5	57.1
충북	793	3.6	493	3.5	366	2.3	240	3.4	48.7
대전	590	2.7	519	3.7	439	2.8	295	4.2	56.8
충남	888	4.0	654	4.6	566	3.6	324	4.6	49.5
전북	472	2.1	510	3.6	332	2.1	255	3.6	50.0
광주	515	2.3	447	3.2	348	2.2	208	2.9	46.5
전남	533	2.4	557	3.9	631	4.0	227	3.2	40.8
대구	945	4.3	735	5.2	725	4.6	385	5.4	52.4
경북	667	3.0	538	3.8	500	3.2	256	3.6	47.6
부산	1,116	5.0	988	7.0	947	6.0	581	8.2	58.8
경남	818	3.7	883	6.2	732	4.7	457	6.4	51.8
울산	457	2.1	342	2.4	206	1.3	153	2.2	44.7
제주	258	1.2	177	1.2	156	1.0	120	1.7	67.8
미분류	-	-	1	-	-	-	-	-	-
계	22,220	100.0	14172	100.0	15,658	100.0	7,103	100.0	50.1

주1) 취업률 = 취업자수/구직자수*100.

주2) '알선' 통계는 2012. 1. 30부터 워크넷 자료와 연계함.

2. 장애인 산업 및 직종별 고용현황

□ 산업별 취업자 및 취업률 현황

- 2017년 3분기 산업별 구인은 제조업(6,617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4,269명)이 전체 49.2%를 차지하며, 취업자는 제조업 1,270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27명, 도매 및 소매업 45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34) 산업별 구인 및 취업자수 현황

(단위:명,%)

구 분	구인수		취업자수	
		증감		증감
농업, 임업 및 어업	96	-7.7	30	100.0
광업	0	-100	0	-100.0
제조업	6,617	37.8	1,270	21.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4	48.8	13	-48.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5	150	9	-25.0
건설업	469	-14.4	61	19.6
도매 및 소매업	1,989	14.9	457	37.2
운수업	1,518	82.7	110	48.6
숙박 및 음식점업	588	-11.4	136	-15.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70	53.2	204	18.6
금융 및 보험업	594	26.9	144	27.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6	-7.3	24	9.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20	35.1	113	25.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269	-9.4	627	-23.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92	20.9	294	27.3
교육 서비스업	323	11	110	14.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08	11.7	434	26.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1	-10.1	35	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09	74.6	199	0.5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등	0	-	0	-100.0
국제 및 외국기관	0	-	0	-
미분류	72	63.6	2,833	66.7
계	22,220	19.7	7,103	28.2

주) 증감은 2016년 3/4분기 대비 증감을 나타냄.

□ 직종별 취업자 및 취업률 현황

-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취업자는 경비 및 청소 1,296명,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1,007명,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831명 순으로 많으며, 취업률은 영업 및 판매 관련직 68.8%, 화학 관련직 6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35) 직종별 취업자수 및 취업률 현황(2017년 3/4분기)

(단위:명,%)

구분	취업자		취업률	
		증감		증감
관리직	76	-9.5	18.8	-10.7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831	21	33.3	-3
금융 및 보험 관련직	12	50	63.2	23.2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16	128.6	16	4.1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0	-	0	-16.7
보건 및 의료 관련직	201	-0.5	29.8	-38.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53	96.3	13.5	4.4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41	-4.7	12.3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45	-19.4	28.2	-8.9
영업 및 판매 관련직	240	34.8	68.8	11.4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296	8.1	43.7	4.5
미용,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67	71.8	30	-20.6
음식서비스 관련직	315	18.4	40.3	-5.8
건설 관련직	25	-13.8	8.5	-8.5
기계 관련직	116	-13.4	25.4	-5.9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접토 및 시멘트)	30	-11.8	21.7	-10.1
화학 관련직	35	59.1	64.8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30	-55.2	41.1	-48.2
전기, 전자 관련직	151	6.3	27.8	2.8
정보통신 관련직	19	-62	11	-32.9
식품가공 관련직	126	90.9	45.2	3.7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	1,007	31.3	36	5.4
농림어업 관련직	21	75	21.7	1.4
미분류	2,250	73.5	-	0
계	7,103	28.2	50.1	3.1

주) 증감은 2016년 3/4분기 대비 증감을 나타냄.

3.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

- 고졸 이상 장애인 인턴제도 시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정부의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독려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 선도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장애인 인턴 시범채용 이후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였음
 - 연구원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적합직무를 발굴하였으며, 부서 책임하에 일정 인원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시행함
 - 행정부서와 각 부서별로 채용을 실시하여 2012년 기준 20명의 직원(정규직 5명, 인턴 15명)을 채용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은 총 4명임

- 자폐성 중증장애인 사서보조원 1호 (경인교육대학교)
 - 2009년 장애 학생 사서보조직 현장 실습 지원 등을 통해 실습을 지원하게 되었고, 2010년 단시간 계약직 채용을 시행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음
 - 대학의 장애인 고용 영역을 자폐성 장애까지 확대하였으며, 예비 초등 교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장애 인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음

-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 (경상남도교육청)
 - TF팀(교육청, 도청, 고용공단 등)을 구성하여 장애인 희망·자립 일자리 만들기 사업 계획 수립, 직무분석을 통한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13종), 장애인 채용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였음
 - 180개 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으로 연도별 채용기관을 확정하여 40명의 장애인 채용 발령장을 수여하고 이후 추수지도(특수교육지원센터), 직무지도원 파견, 담임교사 방문, 후견인 지정, 장애인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운영 등을 실시함
 - 이를 통해 장애인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83억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둠

V. 경남 장애인일자리복지센터 조성방안

1. 현황에서 본 시사점

1) 현황과 시사점

- 장애인 관련 정책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투입이 지속
 -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서 장애인 복지·건강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 지원 등을 과제를 추진 중이며,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우수 고용기업 지원과 인프라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분야로 인권보호 등이 있음
 - 고용부에서는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시설 설치비용 용자, 고용시설 장비, 고용관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표준사업장 설립, 근로지원인 지원을 실시함
 - 2014년 경상남도 정책목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복지·재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 및 생활안정 지원, 다양한 장애인 요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제를 추진함
 - 정책과제를 추진 실무부서인 장애인복지과에서 5개 분야 3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생활환경개선과 건강서비스, 복지·재활사업 내실화, 자립기반 강화, 고용 활성화 및 생활안정, 장애인 욕구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경남도 총예산의 35.6%가 복지예산(사회복지, 보건)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시군의 예산에서 그 비중이 20%를 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중이 높은 농어촌지역
 - 전국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9% 수준이며, 경기도, 서울시 등 인구가 많은 시지역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중은 전남, 전북, 강원 등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음

- 경남의 장애인은 179,530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며, 등급별로는 6급·5급 등 경증 등급 장애인이 전체의 46.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유형별 중증등급 장애인의 비중은 전체 장애인의 36.8%로 나타났음
 - 시군별 장애인 인구비중은 총인구 규모와 유사한 형태로 창원, 김해 등이 높으며, 지역별 인구 대비 비중은 의령군과 남해군이 각각 10.2%로 높게 나타났음
- 경남도 자원봉사자는 총 615,692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이며,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인구 대비 비중은 하동(25.8%), 합천(25.6%) 등이 높음
- 장애인 유형이 단순하고 이용객(장애인)에 비해 부족
 -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개별법에 의해 정해지는 종류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으로 그 유형을 정하고 있음
 - 경상남도 장애인 관련시설은 총 719개이며, 생활시설 89개, 이용시설 135개, 보건기관 412개, 단체 및 법인 83개 등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생활시설은 시설당 71.5명이 이용하고 종사자 1인당 8.0명을 담당하고 있음
 - 이용시설은 시설당 962.8명이 이용하고 종사자 1인당 79.4명을 담당함
- 취약한 장애인 고용현황
 - 전국 평균 장애인 취업률은 61.6%로 나타났고, 취업률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가 120.2%로 가장 높고 충남이 113.6%, 충북이 99.0%로 높게 나타났음
 - 장애인 취업자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가 1,4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734명, 부산 45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경남의 장애인 취업률은 51.3%로 전체 12위 수준이며, 취업자 규모도 262명(9위)임

2) 시사점 도출과 센터 기능 유추

□ 효율적 장애인 정책 실현

- 현재 장애인의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고용, 문화 향유, 사회참여 등 다양한 유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채용 역시 지자체 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고용정책(의무할당, 인센티브 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취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 머물고 있음. 특히 장애인 등급이 낮은 경증 장애인에 비해 중증 장애인의 취업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임
- 또한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설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성이 저감 등의 이유로 장애인의 고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장애인이 일정 수준의 일자리를 보장 받고 경쟁사회와 보호시설간의 중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센터를 제안함

□ 농어촌지역 등 높은 비중의 장애인 인구를 위한 복지시설

- 장애인 인구는 도시지역(시지역)에 그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인구 대비 그 비중을 살펴보면, 농어촌지역(군지역)에서 인구 대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수요가 많은 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태임

□ 장애인 문화·체육·사회(일자리) 복지의 종합적 기능시설

- 경상남도에 점자도서관은 1개소, 체육시설도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창원시에 위치해 있어 경남의 서부권이나 동부권 등에서 이용하기 어려움
- 문화활동, 체육활동,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기능을 담은 센터 건설을 통해 지역의 모든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2. 센터 조성방안

1) 기본 방향

- 체육·문화·사회 활동을 위한 여가 공간 : 문화·체육 기능 제공
 - 장애인의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은 이동이나 사회활동에 있어 제약적인 부분이 있음
 -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체육·문화·사회 활동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특정 지역(창원시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기가 어려움
 - 군지역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센터를 조성하여 장애인의 사회진출이나 문화생활의 형평성을 증대함

-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공간 : 일자리 제공
 -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등의 설비기준을 준수하여 지역의 공공일자리나 일부 사회적기업에 분산되어 있는 공공조달형 물품 제작 등에 센터의 작업 공간(기능)을 활용하도록 유도함
 - 필요에 따라 지역의 장애인 고용이나 물품 생산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생산, 납품, 홍보 등을 연계할 수 있음

-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종합적 제공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중앙기관과 경남도 및 시군지역에서 제공되는 각종 장애인관련 사회복지 정책 및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허브 기능을 수행함
 - 시군구 사회복지 관련 부서를 하여하여 각종 사업이나 정책이 접근함

- 폐교 등의 지역시설 자원 활용
 - 군지역의 경우 폐교 등을 활용하여 센터 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며, 시 지역에서는 별도의 부지나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장애인관련 단체 등과 공유가 가능할 것임

2) 도입기능 및 공간구성 방안

- 작업 공간
 -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작업대, 동선 등을 설계하며, 작

업 형태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확보함

오락 공간 (실내)

- 전일 작업이 힘든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 및 오락시간을 제공하고 주변지역 장애인이 쉽게 방문·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함

보건 공간

- 보건지소 등의 파견근무 형태를 통해 보건 공무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계획함

실내 쉼터

- 휴식이나 오침을 위한 공간으로 장애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온돌이나 침대 등의 시설을 설치함

자원봉사자 사무 공간(쉼터)

-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이 사무를 위한 공간을 계획하고 회의 공간을 계획함

보호자 대기실

- 보호자가 장애인 출퇴근이나 방문의 목적으로 시설에 왔을 때를 위한 공간임

야외 휴게시설 및 운동장

-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야외에 두고 장애인 체육활동 등과 연계하고, 운동장은 잔디 운동장으로 설치하고 장애인의 신체 발달에 필요한 운동 기구 등을 설치하여 운영함

주차장 및 기자재 창고

- 자원봉사자,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야외 공간에 생산이나 작업 등에 필요한 기자재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설치함



〈그림3〉 장애인 일자리 복지시설 모형 공간구상(안)

3. 관리·운영방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본 센터에서의 작업과 운용에는 사업체나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임

- 일정한 일감 제공, 제공에 대한 비용지불 및 일정의 지원, 그것으로 장애인 작업에 대한 수당 지급과 센터 운용에의 기여 등이 필요함

- 지역 자원봉사자 활용
 - 경남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전체 인구의 20% 안팎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러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 이동이나 작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직업이나 특성에 따라 체육, 문화 관람,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사회적기업 연계
 -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생산, 유통, 홍보 등의 활동을 추진함
 - 사회적기업이 직접 센터를 관리와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 공무원 파견
 - 보건 공간 운영을 위한 공무원을 파견함
 - 필요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파견직 공무원을 운영함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1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7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복지법」, 법률 제15270호.
- 김성언·김진혁·임창호(2005),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 노혜정(2008), 지적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의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규(2011), 한국 장애인 복지 발달사, 집문당.
- 이재열(2013),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일교·김만호(2008),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 조흥식(2014.11),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 최성일 외(2013),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경남도청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
-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경남 장애인 일자리복지센터 조성방안

인 쇄 2018년 8월 27일
발 행 2018년 8월 31일
발 행 인 송 부 용
발 행 처 경남발전연구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우 : 51430)
248 Yongji-Ro, Uichang-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51430
Tel (055)267-7447. Fax (055)266-2079
Homepage : www.gndi.re.kr
ISBN : 978-89-8351-586-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